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4. 24(목) 10:00~12:35
2014. 4. 25(금) 10:00~10:4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님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이어서 세월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 역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실종자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시는 기적 같은 일이 제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제1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회의록·속기록 제출 의결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국회 전병헌 위원실, 강동원 위원실에서 2014년 제1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차수의 회의 내용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여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피감 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회의내용,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꼭 발언자 이름을 지워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발언자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마 비공개 회의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발언자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 부분만 발언자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도록 해 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부위원장 호선은 여권 위원 세 분만으로 이루어진 그 회의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정법에 의해서 비공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 위원회 회의의 발언자 이름도 명기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회의 운영 규정에 그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다면 회의에서 논의하고 여기에서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공개 부분에 관해서도 발언내용과 관련해서 발언한 사람의 성명이 그대로 표시가 된 상태에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름을 명기해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구이고 헌법기구이고 우리의 감독기구인데, 통상의 관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또 그쪽에서 문제제기할 소지가 매우 높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 한 분은 아직도 빠져 있습니다만 아까 재적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의해서 여기에서 합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 제8차 회의에서 속기록 제출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명을 음영처리하고 열람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홍 위원님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보니까 회의 관련해서 제4항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6항은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 위원회 운영규칙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조정팀장, 운영규칙 내에 지금과 같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 경우에 발언자에 대한 성명을 가리고 열람시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매번 회의록 열람 관련해서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칙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제20조 회의록 등 공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항에는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위원회는 앞서 말한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시기, 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4항 “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과할 수 있다”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 5월에 비공개 회의 속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열람형식으로 제출하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성명 음영처리 또 공정한 업무 수행 및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시에는 발언위원의 성명을 음영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거해서 2008년 후부터 최근까지 비공개 회의,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자와 발언자의 성명을 음영처리하여 열람시켜 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치명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상임위원 회의가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런 규칙이나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전차 회의의 속기록을 이 름을 음영으로 가리고 제출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 회의에서 실정법이 아닌 한 여기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사무처에서 전에 이렇게 해 놓았다, 전에 의결사항이다, 그 의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처럼 실정법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칙 제정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새로운 의결을 거쳐서 종전의 의결과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누가 어느 분을 지지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또 김재홍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종전에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위원과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처리해서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인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과 또 <의결안건>인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며, <보고안건 라>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결과 공개 시,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가, 나>와 <보고안건 라>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개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디지털 문화 향상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방안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디지털 문화 향상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김재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안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제의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제출한 의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신상발언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고뇌와 고민 끝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 짐작하다시피 세월호 침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더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산 단원고 비극을 당한 학생들과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을 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그 소속 공직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간 고민하면서 이렇게 ‘아, 이것은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해야 하는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고, 저의 회의 불참의 조건, 요구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세월호 침몰, 이 불행한 사고보다 우위에 있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자리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양당 추천 상임위원 다섯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서 숙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야당 추천위원 국회 의결을 거치고 이미 내정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명을 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께 진언하시고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도 계속 이야기 해서 가능하면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국회에 있는 미방위 위원들께 제가 아는 야권 위원이든 여권 위원이든 상대로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의 정체성, 합의제 운영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식언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다수 의사에 따라서 끌어가면 된다, 다수결이 민주적 원칙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민주적 결정방법은 아닙니다. 현대의 성찰적 민주주의에서는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고, 시간에 쫓긴 정책사안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소수자의 의견, 소수파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토권, 거부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합의하기 위한, 말하자면 숙성기간이 있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상임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만 한 번 재확인해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 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 듣기를 희망하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두 번째 말씀하신 합의제 원칙을 지키는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제 입장을 말씀 드린 적이 있고 당연히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규정된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가능하면 상임위원 전부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당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합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합의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잠시 언급하셨듯이 지금 나날이 시급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하여야 할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급한 결정을 늦췄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사안의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원 전원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야당 추천위원 한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 그 법제처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걱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갑갑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하루빨리 신속히 해결되어서 다섯 분의 위원들이 모두 있는 정상적인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준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방통위의 행정행위인데 어떤 시민단체가 국회, 그러니까 추천권을 가진 방통위원의 자격을 질의해 왔다고 해서 방통위가 거기에 답변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답신을 보낼 의무가 있다면 추천권을 가진 국회에 알아봐라,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법제처의 자격 규정에 대한 해석도 아주 좁게 관례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고,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도 최소한 그런 결정을 내린 관련부처와 사전협의해서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를 물어보고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그런데 불과 주말이 끼고 한 3~4일 만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는 정당하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추천권을 가진 위원회 추천절차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국회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옳았다, 적합하다

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와 행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헌법재판소의 소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의 문제인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말하자면 법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제출한 오늘의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문화 향상과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방안인데,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이 상황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만 디지털 문화와 인터넷 공동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고유의 업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행정적인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할까, 우리가 정말 시민사회 누리꾼, 언론계와 함께 디지털 문화를 향상시켜 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세월호 침몰, 이 불행한 사태와 관련한 SNS, 여러분 잘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선정적인 보도,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괴담들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피해자 가족들이 더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들도 큰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SNS의 무분별한 사용자들 공동체적 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갈등을 심화시키고 저급한 루머들을 유포해서 디지털 문화의 심각한 훼손현상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꿈을 키워 가야 할 고교생들의 수학여행 길이었습시다. 거기에 도사린 불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상황입니다. 사회 소통인 인터넷망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그야말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을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창발정책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시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관련 SNS 활동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온 고유업무 중의 하나가 초·중·고 인터넷윤리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편찬하는 일입니다. 물론 한 4년 만에 한 번씩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편·편찬할 때 세월호 관련 SNS 활동을 학습자료 중에 매우 비중 높은 교훈사례로 쓰도록 하겠다, 반항구적으로 초·중·고생들의 인터넷윤리교육 자료로 삼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성 활동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자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나쁜 활동을 해 온 분들에게 경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악성활동을 벌여온 SNS 활동가들, 그 개인과 그룹을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기록하고 그 내용까지 수록해서 후대 학생들에게 교육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정법에 위배되는 문제는다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정부 안팎에 인터넷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일 것입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교육부 사항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교육부와 계속 오랫동안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의 더 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공교육 교과과정에 인터넷윤리를 필수 또는 권장 과목으로 비중을 높여 달라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에 대한 사항은 정말 이것은 교육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뺏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시다. 다만, 학부모들에 대해서 학교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자녀교육과 함께 인터넷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높여달라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로 악성SNS 활동에 대해서 하고, 이 재난상황에서 공동체 정신을 확산하는데 공헌한 아주 바람직한 SNS 활동에 대해서 포상하고 선양하는 계획을 발표하

는 것입니다. 서로 협동,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활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SNS 활동을 장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센티브 의미가 매우 큰 포상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6월이 정보통신의 달입니다. 그런데 매년 말에 인터넷대전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아인세)’ 행사도 있습니다. 6월 초에 정보통신의 날 행사를 할 때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독자적인 포상행사로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상자들은 우리가 주관하는 인터넷윤리교육의 특강사로 초빙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방송사들이 긴밀히 협조해 주기를 부탁해야 합니다. 대대로 홍보해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은 인터넷윤리에 대해서 ‘윤리’, ‘윤리’ 하니까 도덕 교과서 같습니다만 많은 국민 여론층이 우려하는 그 우려가 고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디지털 문화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다른 부처들에게도 동참하는 시그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계획을 시행하고 나서 그 결과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도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가 끝나면 양케트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하고, 요즘 대학도 다 그렇게 합니다. 강의 끝나면 다 강의 평가하는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진전 업그레이드된 어떻게 생각하면 SNS 활동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측정방법도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지금까지 방통위가 주관해 왔던 인터넷 윤리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터넷윤리’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댓글을 단다든지, 사이버 불링(Bullying)을 한다든지 이런 것 위주로 교육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저도 절실히 느낀 것이 SNS 내지는 문자메시지상에서의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방통위가 해 왔던 인터넷 윤리교육 내지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운동에 SNS 내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상에서의 윤리, 건전한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김재홍 위원님이 오늘 제안하신 이 내용을 금년에 방통위가 하는 인터넷윤리 문화, 건전한 문화 확산사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여서 반영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결국 오늘 제안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세부추진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께서 오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정보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터넷혁명 시대의 몇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오늘

다음 또 주제로 우리가 개인정보유출 정보도 다루겠습니다만 그와 함께 인터넷윤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하나의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재홍 위원의 의견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런 세월호의 끔찍한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자칫 오히려 세월호 문제를 특정화해서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런 인터넷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도 벌써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정신적 트라우마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사안과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인터넷윤리교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적 재난상황과 관련해서 선의로 좋은 뜻으로 수상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인터넷윤리에 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터넷윤리를 어린 시절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연극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또 그 현장을 과거에 몇 번 방문해 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물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특히 유치원과 어린 시절에 그런 교육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넷윤리 학습자료집을 배포한 사실이 있지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제안하신 일반적인 인터넷윤리 또 특화하면 SNS에 관련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히 SNS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있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인터넷 윤리'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을 때에는 혹시 인터넷에 한정되는 느낌을 가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인 명칭으로 할 것은 없는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시의적절하고, 시의적절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안된 것이어서 저 역시 이 제안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제안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서, 특히 교육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히 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완전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안하신 것 중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서 소위 아름다운 글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로 초빙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까 싶습니다. 우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설사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 사고의 아픔을 다시 또 읽히는,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5월, 6월까지는 애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시기나 또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예를 들면 시기를 늦추면서 꼭 세월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도 꼭 이 시기가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답변 겸해서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평소에도 해야 할 고유업무가 디지털 문화 향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가 계기는 된다,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일을 지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 이런 계획을 발표해야 시기를 늦추더라도 아마 4월, 5월까지도 계속 가겠지요. 이 악성SNS 활동가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와 자제, 권유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람직한 활동가들 선정해서 포상하는 문제는 새롭게 또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언론계에서도 큰 사고, 불행한 사고가 지난 뒤에 꼭 '특종상' 포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차원은 넘어선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방통위 사무실 문에 노란리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 자신 어제 아침에 제 카톡에 얼굴사진 자리에 그 노란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런 '노란리본 달기 SNS 활동'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할, 장려해야 할 SNS 활동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 시상 계획이 세워진다면 강력한 후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 활동이 좋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드물게 그런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그것이 상처를 다시 건드린다는 걱정은 별로 생각한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사활동도 역사적인 불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그렇게 타기할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더 논의해서 구체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재홍 위원님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제안사항을 추진하려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SNS 관련해서 건전한 SNS 활동, 관련해서 금년 예산에 처음으로 3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그것이 반영됐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김재홍 위원님이 오늘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의 취지나 기본방향이 더 구체화해서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세부계획을 앞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했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사무국에서 정리해 주

사고,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발의제안하고 작성까지 한 이유는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사무처 담당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칙을 의결할 것을 결정해 주시고, 사무처의 담당 간부들에게 시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 의결인지,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최성준 위원장

- 기본적으로 의결사항은 아니어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번에 좀 더 강화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원칙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각 일정별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꼭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 그다음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김재홍 위원님 제안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죄송하지만 제가 발의한 안건은 여기에서 가부를 정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나 대체안이 나오는 정도면 부로 될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구체안에 대해서 사무처가 만들어 오는 것은 차후에 그것만 또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가인지, 부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후속 구체안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내면 나중에 따로 또 논의하면 되고, 이 안이 통과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셔야 사무처도 속도 있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김 위원이 제안하신 그 안의 첫 번째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그 속에도 또 조금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번 시행방안에 들어가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지, 실

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좀 더 숙려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 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안 자체를 의결한다는 것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조금 더 상의하는 기간의 시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론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원래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신 것으로 지금 논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하고,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신속하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시행과정에서 다시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그것의 여지는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만 원안대로 오늘 제안한 내용을 접수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취지나 배경이나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 안건은 김재홍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제안한다는 제목 정도, 키워드 정도는 들었지만 오늘 발표하신 이 내용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듣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터넷윤리 문화 부분은 인터넷진흥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성, 취지, 배경 이런 것은 다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빠른 시간 내에 사무처 그리고 전담기관, 또 그 이외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서 준비한 다음에 다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해서는 사무국에서 세부내용을 마련한 이후에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정리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추진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추진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추진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추진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8일 검찰에서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발표하곤 있고, 2월 7일 총리실에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TF를 구성하곤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13일은 국회 미방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가 개최되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 6일 경찰에서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발표하곤 있습니다. 그날 방통위는 미래부와 민·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원인 조사를 착수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경찰은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 영업점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발표했고, 3월 19일 방통위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곤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하는 사업자 현황입니다.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중인 230만개의 웹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 앱 마켓에 등록된 160만개의 모바일 앱 등이 온라인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전방위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범정부 TF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먼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KT 관련입니다. 민·관 합동수사단에서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981만여 건을 확인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 및 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제재 관련 규정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신사 영업점에 관련된 실태조사입니다. 지난 3월 17일~28일까지 약 5만개의 영업점 중에서 저희가 33개의 개통건수 상위 영업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주로 개인정보 보관 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여부, 그다음에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건도 조사결과와 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영업점 전반에 대한 연중 조사 일정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방통위와 이통사 등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영업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민번호 파기 관련입니다. 추진배경을 보시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12년 8월 18일 이후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고, 금년 8월 17일까지는 기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시면 주민번호 파기 매뉴얼 솔루션을 개발 배포하고 홍보 컨설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중소기업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 주민번호 파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9,000개 업체가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법 시행에 앞서서 현재 주민번호 파기 현황 전반을 한 번 점검해서 추가로 독려토록 하고, 8월 이후 하반기에는 131개의 대형 사업자 위주로 파기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취약 분야와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물·게임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

하였고, 제재 방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털, 이통사, 모바일, 앱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또 이용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 거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에 유출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 또는 검경에서 통보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기에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제도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으로 처벌 강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중입니다만 6월 중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관기간 단축입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3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호화 대상 확대로서 현재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에서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집·이용·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범위에 대해서 협회와 공동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대상 업종은 유료방송사, 통신사, 온라인 포털·쇼핑몰·소셜커머스·게임업체 등입니다. 주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그다음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엄격한 분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은 작년에 전문가 연구반을 거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서 작년 12월, 그다음에 금년 3월에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주요쟁점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어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검토,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범정부 TF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주요 경과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가 지난 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국조실장 주재로 범정부 TF 회의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민간 부분의 실태점검,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고, 그 산하에 운영 부분, 제도개선 부분, 기술 부분 등 3개 분과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된 내용들은 법제 정비, 컨트롤타워 강화, 피해자 구제 강화입니다. 먼저 법제 정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강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강화 관련해서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와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미방위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 상임위 계류 법안에 대한 정부입장 정리, 부처별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6월 중에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관련해서 KT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위원회는 5월 중에, 통신사 영업점 조사 결과 위원회 의결 및 유출 신고 및 검·경 통보 사업자, 포털·이통사 조사는 6월 중에,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도 6월 중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6월 중에, 그다음에 시행령·고시

개정 및 수집·이용·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번호 파기 및 취약 분야 조사 및 결과 위원회 의결은 하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KT 개인정보 유출 조사 문제인데 시간이 조금 당겨졌네요. 원래 6월이라고 했는데 5월로 당긴 것은 잘하셨는데 가능한 한 빨리 당겨야 할 것이 KT 가입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번호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약금에 걸려서 못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 위약금 문제는 여기에서 조사 결과 KT가 기술적으로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결정이 나와 그것을 면제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불안감 때문에도 지금 이동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이용자들에게는 해 주어야 합니다. 위약금을 면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입한 통신사의 개인정보를 다 유출하고 팔았다면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공정책은 심리학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해야해서 기술적인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KT 측과 상의하든지 우리가 결정하든지 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번호를 바꾸어야겠다고 요청해 오면 그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약금을 면제하고...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김재홍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KT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조사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조사이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신고한 이용약관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보고한 3페이지에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실태조사라는 말이 적합한가, 방통위에서 하는 것 중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교육, 홍보, 계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실태점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외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법규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KT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기술적 조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그 위에도 나왔지만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워딩으로 보면 관리적 조치 미비 여부는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번호 파기 후속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년부터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하고 있구요. 현장에서 보면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행 법·제도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대로 하지 않거나 할 수가 없거나 또 그 내용을 모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과적으로 현행법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번호 파기 시한인 8월 17일이 불과 네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올 텐데, 이것이 과연 이 시행일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법 시행에 앞서서 점검하고 독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무처 인력으로, 과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고한 것이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은 되는데 이것을 잘 살펴서 되도록 시행일에 맞춰서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결국 사업자, CEO들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원장님 주관하는 관련된 대형 사업자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은 작년 말에 만들어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위에 보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업종별로 현실에 맞게 디테일하게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법대로 의무적으로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인데, 빅데이터인 경우에는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법·제도와 맞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일부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가이드라인의 효력이나 의미가 뭔가, 이 가이드라인대로 빅데이터 사업자들이 만약 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나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법적 의미나 효력이나 개념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빅데이터뿐만 아니고, IOE, 클라우드,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에서도 악성코드를 통해서 개인정보 수집이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로서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IOE, 클라우드 그리고 스마트폰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기능에 따른 개인정보에 취약한 문제들까지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정부 TF에서 논의하는 사항 중에 지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 때문에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일원화 내지는 망법에서는 삭제하고 개별법을 적용하는 이런 논의를 쫓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고표시로 관장하는 부처를 안행부에서 방통위, 금융위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망이 법으로서 완결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행부와 방통위 간에 법 적용 대상사업자를 놓고 중복이 되거나 서로 그레이(Gray)한 에어리어(Area)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것을 법·규정 가지고 적용 대상사업자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분명한 대상사업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안행부와 방통위 간에 협업을 통해서 공동조사, 실태점검도 공동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법 적용 대상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혼선도 일어나지 않고 또 중복적인 것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엄청나게 일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적은 인력과 조직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6월 말에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도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맞춰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TF라는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TF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TF는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니까 우리 인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전문기관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기주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번호 파기와 관련해서 올 8월 17일까지는 기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수많은 주민등록번호를 그동안 수집해 온 관련 단체들이 과연 이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파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 의식 없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별다른 의식 없이 거기에 응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 가장 키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8월이라는 그 시한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사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업체 관계자들, 특히 CEO들이나 오너들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한 사전적인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허원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 2014년 8월 17일까지 폐기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모든 사업자들이 특히 중소기업자들이 반드시 폐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체의 수나 그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8월 17일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8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가 있을 경우에 그 제도가 약간 무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굳이 내가 이것을 애써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파기의 경우에 8월 18일부터 바로 단속해서 특히 중소기업자들을 전부 처벌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꼭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그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지금부터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이번 세월호 같은 이런 사고도 생기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는 방법이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8월 17일까지 하여간 중소기업자까지도 다 파기하도록 저희가 애쓰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다음 날부터 실태를 확인해서 적발되면 처벌하겠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내년까지 그냥 자꾸 독려만 하고 또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다시 두고 그다음에 그런 유예기간은 원래 법에 의하면 처벌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고,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지 앞으로 다른 제도도 시행하는데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상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법과의 충돌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쳤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는 따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명문에 서로 어긋나거나 배치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법에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과 다른 것은 아니고,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외규정이 없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소위 명문으로 법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이야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법 해석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도 한 번 다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KT에 가입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 경우 위약금 문제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통신망법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어서 책임이 있느냐는 부분과 그다음에 정보통신사업법상 약관에 기해서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없어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서로 일치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견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의 없는데 간단히 제안을 드리면 이 내용 중에 KT 문제나 주민번호 파기 문제나 범정부 TF에 논의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6월 말까지 방통위 차원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종합대책」을 TF를 구성해서 마련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또 리뷰하고 의결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범정부 TF 논의와 관련해서 서로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8개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되, 권한 행사를 안행부뿐만 아니고 방통위, 금융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조항 내용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약간 차이를 두고 가지고 있는 규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흡수됐을 때 과연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신속히 TF를 구성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의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에”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접수하고자 합니다.

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수습지원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사고 개요는 2014년 4월 16일 8시 55분경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해 중이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병풍도 해상에서 침몰하여 현재 구조 수색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구성·운영 중입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수부, 안행부 등 10개 부처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세월호 관련 재난방송 요청을 4월 16일에 하였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의무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하였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고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재난방송의 준칙을 준수하고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는 세월호 관련 상처를 주는 보도와 게시글 자제 당부를 하였는데, 방송사에 재난방송 준칙 고시에 따라 선정 보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포털사에 유가족에 상처를 주는 악성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19일에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수습지원 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위해서 연락관을 파견하였습니다. 4월 22일에는 세월호 관련 선정방송 자제 등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방송사에 한국기자협회 세월호 참사보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였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전달을 당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재난방송협의회 긴급안전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수습 및 구조 관련 방송사의 선정방송 자제 등을 협조 권고안을 안전으로 상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난방송협의회는 국조실, 방통위, 미래부 등 정부부처와 지상파, 종편, 보도PP 등 15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에는 한국방송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세월호 사고 재난방송 관련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선정적 보도 자제 등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사고수습 지원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방송사의 재난보도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위원회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고수습 지원상황실을 지하1층에서 운영 중입니다. 기간은 4월 22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이며, 재난상황반 편성은 재난상황 반장을 비롯해서 6명입니다. 주요임무는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상황총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사업자 등 협조 체계 유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위원회 파견자 업무 지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는 대부분의 방송사가 신중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무리한 인터뷰, 오보 등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각종 재난발생 시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습지원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관련법령과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고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 방통위가 이 엄청난 재난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부처는 아니지만 오늘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왔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근거나 주관 부처는 어디입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지금 재난방송협의회는 미래부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안행부 소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재난관리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의 재난방송 규정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보니까 제6장 방송통신 재난의 관리, 이것은 결국 여기에도 나왔지만 향후 계획에 이런 체계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들은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첫째가 방송사, 통신사들의 인프라 시설이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복구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것이 주로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재난방송은 원래 출발했던 취지는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국지적으로..., 최근에 기상변화가 일어나서 국지적인 호우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시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산간지역에는 휴대폰 통화 음영지역도 있어서 빨리 등산객들을 긴급 대피하도록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통보해 주는, 이런 취지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재난유형, 사고유형별로 우리가 제도나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방송통신 재난의 관리 내지는 재난방송과 관련된 현행 규정이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사고와 직접 연계시키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보면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고방송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방송은

한국방송공사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주관기관과 다른 방송사업자 간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한다.”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사생활 보호에 유의할 것”, 제4호에 “복구상황을 정확하게 방송할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한번 현행 우리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SNS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소위 말하는 불법정보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불법정보의 유형으로 하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까 김재홍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에서도 많이 이야기된 것이지만 SNS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가지고 규율하기가 적정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실정법으로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내지는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재난방송이 이번에 발생한 사고 내지는 사건을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유포되는 메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규율할 것인가, 아니면 규율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방송협의회도 명칭으로 보면 재난방송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지상파나 종편이나 보도PP의 경우에는 방통위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래부가 주관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방송시설을 복구할 때 또 지상파와 종편·보도PP는 거기의 시설을 복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또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경우 미래부가 하고, 뭔가 미래부와 역활이나 기능에 관해서도 클리어(Clear)하게 해놓아야 앞으로 이런 인위적이건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방통위가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법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현행화시키는 등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협의회 부분도 미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재난에 대한 정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나>항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등을 나열하고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해난사고인데 그 해난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유형에 대해서 법에 모든 것을 다 하나씩 열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고라는 것이 또 항공기에 의한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재난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이고 또 실종자가 가능하면 조기에 생환을 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지금 8일간 24시간 철야에 또 재난방송에 임하고 있는 방송사, 언론사의 임직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과 관련해서는 제가 언론계 출신입니다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실시에 관한 기준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고 고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올 1월 29일에 제정이 돼서 고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

에 관해서는 각 언론사에 고지해서 또 이 내용들이 취재기자들이나 또 일선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와 프로듀서, 아나운서 이런 모든 현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방송을 쪽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기 고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이런 고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가 올 초에 이미 제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해당 언론사와 또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의를 요하는 것은 재난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나 인재, 인재는 법정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이 써온 용어지만, 세월호 침몰사고는 아마 사회적 재난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사고이건 간에 국민의 인명, 재산이 광범위하게 다수가 희생되면 그것은 재난이라고 봐야겠지요. 질병, 전염병은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도 법규에 어디에 해당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난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제의한 인터넷 SNS 말고 방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송과 함께 이 세월호 사고에 관련해서 방송보도가 아주 선정주의적이었다, 인터뷰도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통위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말하자면 관행 때문에 그런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요청하는 것 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매우 긴박하고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 결정된 뒤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 가지고 통보만 해 준다, 우리의 역할이 정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과도 소통을 하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우리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번 마련하든지 해서 실정법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문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알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시를 발표하고 제정하는 것과 소위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혹시나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언론사들이 대체로 자체 내 심층 취재에 대한 윤리, 실천윤리강령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취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준칙을 보니까 그 준칙 내용이 그 가이드라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언론의 자유와 충돌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사에도 우리가 이런 고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재난방송 관련 규정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재난방송이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고, 재난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각 재난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재난상황에 맞는 방송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각 방송사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신속히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의 권한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안행부, 그다음에 해수부, 해경 사이의 권한, 또 어떤 의무적인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 원활하지 못한 수습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도 미리미리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에 꼭 누가 우선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허원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고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저희의 고시를 방송사에게 저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참조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각 회장단에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지금 기자협회에서 세월호 참사보도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것과 큰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문제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자체가 독립된 기구여서 개개의 심의에 관련해서는 저

회가 의견을 말해서도 곤란하고 간섭해서도 곤란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심의에 관한 규정
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것이 특히 재난과 관련해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조하고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협의할 일이 있으면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
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제일 먼저 의견을 말씀 드리다 보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재난방송과 관련된 규정
이 미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시행령과 고시내용을 이번 사
고를 보면서 다시 보완·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인위적
인 재난이나 사고가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 이 법의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되다 보니까 이번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를 놓고 다시 규정을 보다 보
면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음
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특히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지상파가 3개사이고 그다음에 종편이
4개사이고 보도PP 2개사가 있는데, 재난이 났을 경우에 9개 방송사 모두 많은 취재인력을
보내서 취재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가고, 거의 재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종일방송을 하
고 그다음에 일반방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관해서 법 규정에 보면 주관기관을
두고 하는 것들이 그런 상황에 대한 서로의 업무분담 또 방송시간의 조정 이런 것들도 이
번 기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어
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런 재난방송에 관해서 현실과 규정
의 차이 또 규정과 규정 사이의 불일치, 그다음에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
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위원장님, 이번에 재난방송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조
금 관심을 가지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쨌든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편성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 국민적인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이
생기기 전에 예비적인 방송, 보도, 그리고 그것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예비적인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진행되는 관계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방송의 내용
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방송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방송사는 KBS방송국
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관방송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편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더 이상 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부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조금 분석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고, 방송 중에 공영방송이 있고 민영방송이 있습니다. 신문에 관한 한 정부의 기구나 사 인세력이 이래저래 간섭하는 것은 정말 언론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전파매체를 이용해서 활동하고 돈도 버는 사업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 공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거기에 기반해서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과 민영을 떠나서 전파매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방송에 대해서도 종편을 포함한 상업방송에 대해서도 주문하고 요청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협력과 협조를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가령 민영방송, 상업방송이 우리는 이제 광고를 더 방송해야겠고 경영상 돈 벌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방송을 줄이겠다고 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은 조금 더 공영방송과 함께 민영이라 하더라도 재난방송을 함께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재를 이용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재난방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두 분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의 편성권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고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에 보면 주관방송사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관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또 주관방송사는 이러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주관방송사가 있어야 한다, 또는 방송사 간에 방송시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난이 생겼을 때 여러 개 방송사들이 그 재난방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이런 규정으로 남겨 놓자는 것이 제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런 점이 고려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확장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본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 안건은 모두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부터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좌석을 정리해야 하니깐요.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최성준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의결사항

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2014-15-053) (비공개)

- 이기주 상임위원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 최성준 위원장
-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오후에 속행하기가… 조금 늦게 하면 되긴 되지요? 오후에 규제개혁 회의가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또 차관회의가 4시에 있어서….
- 김재홍 상임위원
- 오늘 안건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서….
- 최성준 위원장
- 점심 약속 때문에 그러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오후에 시간을 만들어 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오후에 규제개혁 회의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의 틀을 각 업계 단체 대표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빨리 끝내지요. 여기에서 꼭 고쳐야 할 것 아니면...

○ 최성준 위원장

- 아니면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남은 안건이...

○ 김재홍 상임위원

- 서면결의하든가...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서면결의는 그렇고, 지금 남은 안건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의결안건이긴 하지만 오늘 오후에 차관회의가 4시라고 말씀하셨지요? 제 2시 회의와 또 안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속행해도 됩니다. 오늘 중에 속행하라는 이유는 없으니까, 내일 중에 속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 비공개 안건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내일 아무 때나 좋습니다. 오전에 했으면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무 때나 좋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오전에 좋습니다. 오전에 10시에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휴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 4. 24(목) 12시 35분 휴회 】

【 4. 25(금) 10시 00분 속개 】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2014-15-054) (비공개)

7. 보고사항

라.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비공개)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날짜는 다음 주로 하면 5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되는데, 그때 특별한 안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유동적으로 5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또는 5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25(금) 10시 40분 폐회 】